일제 강점기 한국관습조사자료의 소장 현황과 분류·記述

-국사편찬위원회와 수원박물관 자료를 중심으로-

이승일*

목 차

Ⅰ. 머리말
Ⅱ. 일제의 한국관습조사사업과 조선총독부 중추원 자료군
  1. 일제의 한국관습조사사업과 관련 기록물의 형성
  2. 해방 직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련 자료의 산일
Ⅲ. 일제 관습조사자료의 기관별 현황과 특성
  1. 국사편찬위원회의 중추원 자료군의 소장 현황과 분류, 記述
  2. 수원박물관 소장 관습조사자료의 현황과 특징
Ⅳ. 맺음말

[국문 요약]

일제는 1906년부터 1938년까지 한국에 대한 관습조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였다. 1906년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부동산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습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1908년에는 민법 제정을 목표로 한국의 관습과 제도를 조사하였다. 한국병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관습조사와 그 부속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이 기록물들은 근대 한국인들의 관습, 민속, 법 생활 등을 알 수 있는 문서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자료들이 얼마나 생산되었고 어느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원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관습조사자료의 현황과 그 특성을 비교하여 소개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들은 모두 관습조사의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군들임에도 불구하고 소장기관에 따라서 분류 및 정리 방식이 각각 다르고 또한 자료의 성격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연구자들의 활용도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전임연구원(blueat89@hanmail.net)

를 높이기 위한 '관습조사자료'들의 소재를 소개하고 각 자료군의 분류 및 정리체계를 새롭게 제안하며 목록기술(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주제어] 관습, 관습법, 관습조사, 국사편찬위원회, 수원박물관

Ⅰ. 머리말

일제는 1906년부터 1938년까지 한국에 대한 관습조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였다. 1906년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의 부동산 관련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부동산법조사회를 설치한 이래로 1908년에는 법전조사국에서 한국의 관습과 제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병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취조국, 참사관실, 중추원 등이 관습조사와 그 부속사업을 수행하면서 대량의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부동산법조사회와 법전조사국에서는 在韓 일본인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부동산법, 민법, 상법, 형법 등 주요 법률들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이 두 기구에서는 법률 제정에 앞서서 일본 본국의 '民事慣例調査'와 대만의 '舊慣調査'를 참고하여 한국인의 주요 관습 및 구래의 제도를 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私法的 범주에 해당되는 民事 및 商事관습을 채록한 '慣習記錄書'가 작성되었다.[1)]

한국병합 이후에는 1912년에 조선민사령이 제정되면서 재산편(물권, 채권)은 일본 민법이 그대로 한국에 시행되었고 신분편(친족, 상속)과 부동산 물권의 일부는 관습이 法源으로 인정되면서 일제에 의해서 '기록된 관습'은 한국인의 법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식민통치의 필요에 따라서 조사의 범위가 한국

1)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관습조사와 이 과정에서 채록된 관습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승일c, 「동아시아에서 재판 규범으로서의 '관습법' 개념의 수용과 변용－全國民事慣例類集, 韓國慣習調査報告書, 臺灣私法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3(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12); 이승일b, 「일제의 관습조사사업과 전국적 관습의 확립과정 연구」, 『대동문화연구』 67(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인의 풍속, 제도, 역사, 소작, 생활상태, 한국어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조사자료들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직접 조사 · 기록하였고 한국인을 상대로 인터뷰한 '실지조사'와 조선 재래의 문헌을 조사한 '문헌조사(또는 典籍調査)'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관습조사자료들은 조사방식을 기준으로 '실지조사서'와 '문헌조사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실지조사서'는 조사의 지역 및 주제에 따라서 '지역조사서'와 '특별조사서'로 나눌 수 있다. 이 조사자료들은 국내 · 외 여러 기관에 약 7,700여 책이 남아 있는데 식민통치의 기초자료로서 생산되었으면서도 한국인들의 일상 생활과 법 규범, 제도, 풍속 등을 방대한 규모로 채록하였다는 점에서 다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자료들은 관련 학계에 충분히 소개되거나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법사학계가 조선관습이 식민지 민사재판의 法源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식민지 관습법을 연구한 이래로 역사학 · 민속학 · 인류학계 등에서도 근대 한국인의 관습, 풍속, 제도, 종교, 일상 생활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일제가 생산한 조사자료들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연구가 일부 수행되기도 하였다.[2] 이 연구들은 일제가 기록하고 법적 성질을 부여한 관습(법)이 한국인의 관습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본 민법의 영향하에서 일부 변형되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인용된 '한국관습조사보고서'와 행정기관의 통첩 및 회답,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등은 식민지적 관습(법)의 결과는 보여줄 수 있지만 한국의 관습(법)이 채록되고 단일한 관습으로 확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

2) 정긍식, 『韓國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심희기, 「일제 강점 초기 식민지 관습법의 형성」, 『법사학연구』 28(한국법사학회, 2003); 이승일a,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역사비평사, 2008); 이영학, 「통감부의 조사사업과 조선침탈」, 『역사문화연구』 39(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1); 장철수, 「조선총독부 민속조사자료의 성격과 내용」, 『정신문화연구』 21-3(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朴賢洙, 「日帝의 朝鮮調査에 관한 硏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鄭鍾休, 『韓國民法典の比較法的硏究』(東京 : 創文社, 1989); 최석영, 「일제의 구관조사와 식민정책」, 『비교민속학』 14(비교민속학회, 1997); 홍양희, 「식민지시기 친족관습의 창출과 일본 민법」, 『정신문화연구』 28-3(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는 한계가 있다. 이는 관습조사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였고 각종의 지역조사와 특별조사서를 함께 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3]

또한, 종전 연구들은 방대한 규모로 생산된 관습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분석하지 못하고 매우 단편적·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관습조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역사학, 법학, 민속학계에서조차도 조사자료들이 어느 정도로 생산되었고 어느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관습조사자료에 기록된 '근대 이행기 한국인의 생활상'을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부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해당 자료들을 통해서 한국인의 관습, 민속, 풍속 등 일상 생활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식민지 시기 민사 재판에서 法源으로 활용된 관습이 한국인의 법 생활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습조사자료들에 대한 생산 및 소장 현황의 조사가 필요하고, 그 자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초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관습조사자료의 대부분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수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일부가 한국 국회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 규장각, 연세대학 도서관, 경상대학 도서관 및 기타 대학도서관 등에 산재되어 있다. 일본과 미국의 대학 도서관에도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수원박물관에는 (고)이종학 선생의 유족들이 기증한 자료 중에서 법전조사국 및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관습조사자료가 약 1,380여책이 남아 있으나 최근까지도 학계에 널리 소개되지 못하였고 연구자료로 활용되지도 못하였다.[4]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련 자료는 1,508종, 4,770여책으로 알려져 있는

3) 법전조사국이 수행한 관습조사의 방법 및 그 과정, 피조사자 등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승일b, 앞의 글.

4) 한국역사연구회의 토지대장반 소속 연구자들이 약 358책에 대한 해제를 작성하여 해당 자료들을 상세히 소개한 것이 유일하다.

데 이 중에서 관습조사자료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근대 한국인들의 일상 생활과 규범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원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관습조사자료의 현황과 그 특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료들은 모두 관습조사의 일환으로 생산된 자료군들임에도 불구하고 소장기관에 따라서 분류 및 정리 방식이 각각 다르고 또한 자료의 성격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연구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습조사자료'들의 소재를 기관별로 소개하고 각 자료군의 분류 및 정리 체계를 새롭게 제안하며 목록기술(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일제의 한국관습조사사업과 조선총독부 중추원 자료군

1. 일제의 한국관습조사사업과 관련 기록물의 형성

조선총독부 중추원 자료군은 역사적으로 계통을 같이 하는 조사기관이 직접 생산하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집한 기록물을 통칭한다. 즉,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설립된 부동산법조사회, 법전조사국, 취조국, 참사관실 등에서 생산 · 수집한 기록물의 일체를 말한다. 관습조사자료는 중추원 자료군의 일부이기 때문에 관습조사자료의 범위를 획정하고 그 자료들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조사기관들의 연혁과 주요 업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관습조사는 일제의 한국 침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1906년에 부동산법조사회를 설치하여 부동산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토가 부동산법조사회를 설치한 이유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재산을 법률로써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부동산 관련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한국 관습의 조사를 추진하였다.[5)]

이토는 일본 민법의 기초자이자 민법학의 대가였던 우메 겐지로(梅謙次郞)를 초빙하여 한국의 부동산 관련법의 起案과 관습조사를 맡겼다. 부동산법조사회는 지방의 老儒碩士 가운데 연혁이나 관습에 정통한 한국인 관료를 위원으로 임명하였으나 실제적인 조사는 일본인이 직접 수행하였다.[6] 山口慶一을 비롯한 일본인 조사자들은 대체로 호세이 대학(法政大學) 출신이었으며 中山成太郞은 대만 구관조사에도 직접 참여한 바가 있었다.

우메는 일본본국의 '民事慣例調査'를 모방하여 관습조사를 지휘하였는데, 부동산법조사회는 미리 조사사항 설명서를 보내어 각 관아에서 응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관아는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이 같은 조사방식은 일본에서도 채택·시행된 바가 있었고 관습조사가 한국에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사의 수행상 또는 조사사항의 신속한 답변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부동산법조사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조사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북도,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경기도, 경상남북도 등의 지역이었다. 우메가 직접 참여한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지역은 경성이사청, 인천이사청, 개성부, 평양관찰부, 평양이사청, 수원관찰부, 대구관찰부, 부산이사청, 마산이사청 등 5개 이사청, 3개 관찰부 및 1개 부 등이었다.[7]

하지만 우메가 참여한 관습조사는 조사 기간이 짧았고 피조사자의 수도 매우 적었다. 응답자는 일본인 이사관이나 한국인 군수 등 1~2명에 불과하였고 인터뷰 시간도 2~3시간 정도였다. 그리고 응답자가 군수, 관찰사 등의 관료들

5) 최원규, 「대한제국과 일제의 土地權法 제정과정과 그 지향」, 『동방학지』 94(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6).

6) 부동산법조사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 참조. 정긍식, 『韓國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이영미, 『한국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일조각, 2011); 이승일c, 앞의 글.; 왕현종, 「1906~1907년 부동산법조사회의 활동과 한국 토지 관습」, 『일제의 조선관습조사자료의 현황과 성격 Ⅱ(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자료집)』(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2012).

7) 우메가 수행한 한국 부동산 관습 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승일c, 앞의 글.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권에 대한 관습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료들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소작인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극히 제한된 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시행되었다. 더구나, 한국인 외에도 일본인 이사관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방의 관습을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가 어렵다.[8)]

이후 川崎萬藏과 山口慶一, 平木勘太郎 등이 우메의 조사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1906년 8월부터 제2차 조사를 시행하는 등 한국의 주요 지역의 부동산 관습을 조사한 후에 관련 조사보고서류를 작성하였다. 아래의 표는 부동산법조사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9)]

〈표 1〉 부동산법조사회가 생산한 기록물의 현황(총 13책)

韓國土地所有權ノ沿革ヲ論ス(국내 소장)
維新後不動產法(국내 소장)
膠州灣占領ノ當初ニ於ケル獨乙國政府ノ施政(국내 소장)
不動產信用論(국내 소장)
調査事項說明書(국내 소장)
韓國不動產ニ關スル調査記錄(국내 소장)
屬領制度ニ關スル學說及實際(국내 소장)
韓國不動產ニ關スル慣例 : 第1級(일본 교토대학 소장)
韓國不動產ニ關スル慣例 : 第2級(국내 소장)
韓國ニ於ケル土地ニ關スル權利一班(국내 소장)
朝鮮皇室及民族變遷ノ梗要(국내 소장)
土地及建物ノ賣買, 贈與, 交換及典當ノ證明ニ關スル規則及指令等要錄(국내 소장)
土地家屋證明規則要旨(국내 소장)

비고 : 不動產法調査報告要錄은 부동산법조사회의 결과물을 토대로 법전조사국이 출간하였기 때문에 법전조사국 기록물로 편입하였다.

8) 이승일c, 앞의 글.

9) 부동산법조사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 참조. 최원규, 「대한제국과 일제의 土地權法 제정과정과 그 지향」, 『동방학지』 94(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6); 윤대성, 『한국민사법제사 연구』(한국학술정보, 2009); 이영미, 『한국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일조각, 2011); 왕현종, 「1906~1907년 부동산법조사회의 활동과 한국 토지 관습」, 『일제의 조선관습조사자료의 현황과 성격 Ⅱ(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자료집)』(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2012).

이외에도 부동산법조사회 관련 기록물로서 부동산법조사회의 조직 및 직원의 任免, 출장 관련 공문서가 남아 있다. 이 공문서들은 대한제국 공문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不動産法調査會案' 등이다.

부동산법조사회는 일제의 대한정책이 변화함에 따라서 1907년에 폐지되었다. 1907년에는 일제가 한국을 실질적 종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사가 크게 확대되었다.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일제는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황제로 내세웠으며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정미7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미7조약은 한국의 사법제도 개편 및 각종 법률 제정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일제는 이 조약을 근거로 재판소구성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한국의 사법제도를 일본식으로 개편하고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의 기준으로 사용할 각종 법률을 정비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전조사국을 설치하여 각종 입법에 필요한 자료들을 대거 수집 및 생산하였다.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에 참여한 인물들은 安藤靜, 平木勘太郎, 下森久吉, 丹羽賢太郎, 川原信義, 岩谷武市 등 모두 일본인들이었고 이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인 통역자가 배당되었다. 법률안 기초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위원들도 松寺竹雄, 安住時太郎(법부서기관), 膳鉦次郎(검사), 國分三亥(검사), 中村竹藏(판사), 城數馬(판사), 渡邊暢(판사), 유성준, 김낙헌, 이시영 등으로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10]

다만, 법전조사국은 부동산법조사회에 비하여 조사 지역 및 피조사자, 조사 일정 등에서 규모가 컸다. 관습조사 방법으로는 실지조사와 문헌조사가 있었는데 실지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일반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48개 도시를 선정하여 수행되었는데, 법전조사국은 조사의 편의를 위

10) 법전조사국의 위원 및 조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 참조. 정긍식, 『韓國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이승일a, 앞의 책.

하여 전국의 48개 지역을 제1관 지역과 제2관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제1관 지역은 1908년에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의 한반도 중남부 26개 지역을 조사하였고, 제2관 지역은 1909년에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등의 한반도 중북부 22개 지역을 조사하였다.[11]

일반조사는 실지조사의 방식을 취하였는데 실지조사는 각 지역에서 관습조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선발하고 해당 관청으로 불러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법전조사국은 1910년에 일반조사뿐만 아니라 특수사항에 관해서는 9개도 38개 지역을 선정하여 별도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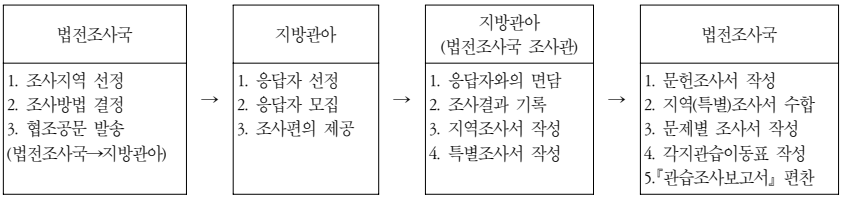

〈그림 1〉 관습조사의 프로세스

이승일, 「일제의 관습조사사업과 전국적 관습의 확립과정 연구」, 『대동문화연구』, 67(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의 기록물들이 생산되었다. 예컨대, 각종 조사보고서류 외에 법전조사국의 조직(안) 및 직원의 임면, 출장 협조에 관한 공문서들이 생산되었는데 이 기록물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법전조사국의 조사자료들은 매우 방대한 양으로 남아 있는데 식민지 재판에서 法源으로서 기능을 한 것이 '관습조사보고서'

11) 이승일b, 앞의 글.

12) 특별조사지역은 개성, 수원, 여주, 풍덕, 장단, 파주, 연천, 재령, 서흥, 안악, 봉산, 평양, 진남포, 숙천(肅川), 의주, 용천, 정주, 공주, 강경, 연산, 대구, 경주, 성주, 포항, 부산, 마산, 울산, 밀양, 김해, 용남, 광주, 목포, 나주, 법성포, 순천, 전주, 군산, 금산 등이다. 이승일b, 앞의 글.

이다. 이 '관습조사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출판된 것으로서, 이 출판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역조사서, 특별조사서, 문헌조사서가 별도로 만들어졌다.[13]

〈표 2〉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일반 및 특별조사보고서류의 현황

조사보고서의 종류		조사보고서의 세부 유형	
일반 조사서류 (719책)	지역조사서 (총 48책)	제1관 지역 (중/남부)	경성, 개성, 인천, 수원, (안성), 청주, 충주, 영동, (대구), 상주, 경주, 울산, (동래), (창원), 진주, 청주, 무안, 광주, 옥구, (전주), 남원, (공주), 온양, 예산, 恩津 등 지역조사서류 26책
		제2관 지역 (중/북부)	해주, 황주, 평양, 삼화, 안주, 덕천, (용천), 의주, 강계, (영변), 경흥, 회령, 鏡城, (성진), 북청, (갑산), 함흥, 덕원, 金城, 춘천, 원주, 강릉 등 지역조사서류 22책
	관습조사보고서 (총 6책)	제1문~제20문, 제21문~제50문, 제51문~104문, 제105문~157문, 158문~180문, 제181문~206문	
	各地慣習異同表[14] (총 5책)	제21문~제50문, 제51문~104문, 제105문~157문, 158문~180문, 제181문~206문	
	문제별 조사서 (총 660책)	총 문항이 206개인데, 제1관 및 제2관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문제별로 초서본과 정서본을 별도로 작성하였다. 제1관 지역과 제2관 지역으로 묶어서 부책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각 1개 문항당 최대 4책(제1관 지역 초서본 및 정서본, 제2관 지역 초서본 및 정서본)이 생산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문항을 대상으로 정서본을 전부 작성한 것은 아니었고 총 660책이 생산되었다.	
특별조사서류[15] (총 111책)		女子ノ營業ニ關スル調査書, 冠禮笄禮ニ關スル調査書, 國籍喪失ニ關スル調査書, 法人ニ關スル調査書, 面及洞ノ權利能力ニ關スル調査書, 寺院ニ關スル調査書, 土地ノ種目ニ關スル調査書, 外人ノ土地所有權ニ關スル調査書, 永給田ニ關スル調査書, 墳墓ニ關スル調査書, 入會ニ關スル調査書(대구, 동래, 창원 각 1책씩 총 3책), 家券地券ニ關スル調査書, 地上權ニ關スル調査書, 永小作權ニ關スル調査書, 典當ニ關スル調査書, 土地ノ添附ニ關スル調査書, 氏姓ニ關スル調査書, 次養子ニ關スル調査書, 養子緣組ノ方式ニ關スル調査書, 婚禮ニ關スル調査書(2책), , 家僧ニ關スル調査書, 於音ニ關スル調査書 등 111책	
종합		총 830책	

출처 : 朝鮮總督府, 『舊調査書表』, 발행년도 미상[16]
비고 : 지역조사서 중에서 ( )표기가 된 것은 현재 소장처가 확인된 지역이다.

13) 법전조사국의 조사활동의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승일b, 앞의 글.
14) 문제별 조사서를 토대로 하여 각 질문에 대한 각 지역별 관습의 유사성과 차이점만을 기록한 것이다.
15) 이 자료 중에서는 부동산법조사회가 조사하고 법전조사국이 최종 정리한 不動産法調査報告要錄도 포함되어 있다.
16) 이 자료는 版心에 조선총독부로 표기되어 있고 해당 내용에 1911년 취조국 조사자료의 현황도 일부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910년 법전조사국이 폐지되고 잔무를 정리하면서 작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최소한 법전조사국 당시에 생산된 자료들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도표에서 인용한 '舊調査書表'는 취조국이 법전조사국이 수행한 업무를 정리하면서 생산 · 보유하고 있던 실지조사서류의 현황을 기록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1910년 '한국관습조사보고서'를 편찬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문제별 조사서, 각지관습이동표 등의 부책의 수도 표기하고 있어서 1908년부터 1910년까지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주요 실지조사서류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으며 문헌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조선 재래의 법전, 고문서, 각종 거래양식 등도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관습조사자료의 관련 자료로서 우메 문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메는 부동산법조사회부터 법전조사국이 폐지되기 직전까지 한국의 법률(안) 제정과 관습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인물이다. 현재 일본 호세이 대학(法政大學) 도서관에는 우메가 起案 · 보관하던 한국 관련 입법자료들이 약 54건이 소장되어 있다. 이 문서들을 분석하게 되면 대한제국 입법과 관련된 통감부의 정책 방향과 우메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민법 제정을 목표로 하였던 법전조사국은 일제가 한국병합을 단행하면서 폐지되었다. 1912년에 조선민사령이 제정되면서 일본 민법의 재산편이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시행되었다. 다만, 부동산물권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상의 물권과 함께 관습상의 물권도 인정되었고[17] 친족과 상속의 분야는 관습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관습기록서'는 法源을 담고 있는 유력한 자료로서 인정되었다. 또한, 일본인들이 직접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가 있으나 당시 대한제국인들의 일상과 법생활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18]

한국병합 이후에는 조사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 1일에 취조국을 설립하여 법전조사국의 사무를 승계하였다. 취조국은 조선

17) 부동산물권에 관하여 한국 관습도 法源으로 인정되었으나 각종 재판 등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18) 이승일c, 앞의 글.

총독에 속하고 ①조선의 각반의 제도 및 일체의 구관조사, ②총독이 지정한 법령의 입안 및 심의, ③법령의 폐지 개정에 대해 의견의 具申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19]

취조국은 한국병합의 결과 舊 제도 및 관습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식민행정상 각반의 시설에 자료를 제공하고 또 사법재판의 준칙이 될 만한 관습을 제시하며, 동시에 한국인에게 적합한 법제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 전역에 걸쳐서 각지의 관습을 조사하고 典籍을 섭렵하여 제도 및 관습의 淵源을 찾기로 하였다. 예컨대, 한국인의 토지제도, 친족제도, 面 및 洞, 종교 및 사원의 제도, 양반에 관한 제도, 조선어사전 편찬, 지방제도, 舊법전조사국의 조사사항 정리, 常民의 생활상태, 한국통치에 참고할 수 있는 구미각국의 속령지 및 식민지 제도연구 등 18개 항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20]

그러나 취조국은 1년 반만에 폐지되는 바람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지방제도, 소작관례, 水利의 설비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등사판으로 만들어서 관계 부국에 참고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대한제국 정부의 각종 공문서 및 규장각 도서들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전회통의 飜刻, 조선어사전의 편찬, 조선도서해제에 착수하였고 잔무는 참사관실로 인계하였다.[21]

1912년 4월 1일에 설치된 참사관실은 취조국의 업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다만, 조선민사령이 제정되면서 일부 조사의 범위가 조정되었는데, 구관조사는 조선민사령에서 관습으로 규율하기로 정한 아래의 사항, 즉 ① 조선인의 능력 및 무능력자의 대리에 관한 관습 ② 조선인의 친족에 관한 관습 ③ 조선인의 상속에 관한 관습 ④ 조선 내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종류, 효력 및 그 득상변경에 대한 특별한 관습 ⑤ 조선인 외에 관계없는 사건에 대해 公의 질서에 관

19)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21~22면.
20)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21) 이승일a, 앞의 책.

련되지 않은 규정과 다른 관습 등이다. 이 같은 조사 사항을 근거로 하여 참사관실이 실지조사를 수행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3〉 참사관실의 실지조사항목

능력에 관한 사항	幼者의 행위능력, 心神에 異狀있는 자의 행위능력, 不具者의 행위능력, 妻・妾의 행위능력, 浪費자의 행위능력, 무능력자의 행위의 효력 및 그 追完, 행위능력의 보충 및 제한의 除却, 무능력자의 대표 및 재산의 관리(8항 64문)
친족에 관한 사항	친족의 범위, 호주 및 가족, 혼인, 친자, 부양, 친족회, 喪式 및 喪服(10항 51문)
상속에 관한 사항	제사상속, 재산상속, 호주상속,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의 정지, 상속인의 曠缺, 상속의 회복, 廢家・絶家 및 廢絶家 再興(10항 51문)
유언에 관한 사항	유언, 유증(2항 11문)
물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상권, 영소작권, 지역권(地役權), 입회권, 유치권, 선취특권, 전당권, 특종의 물권(9항 38문)
채권에 관한 사항	다수 당사자의 채권, 다수 당사자의 채무, 불가분 채권 및 불가분 채무, 보증채무 및 채무의 인수, 채권의 양도, 채권의 소멸, 계약의 성립 및 해제, 매매, 교환, 채대차(債貸借), 소비대차(消費貸借), 사용대차, 고용, 청부, 위임, 기탁, 조합, 정기금 채권, 화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식(利息), 손해배상(24항 62문)
기타 사항	법인(法人)에 관한 사항, 기간에 관한 사항, 부녀에 관한 사항, 승려에 관한 사항, 비복(婢僕)에 관한 사항, 특종부락에 관한 사항(6항 21문)

출처 :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역사비평사, 2008).

위의 조사사항 중에서 참사관실이 조사를 완료한 조사보고서는 실지조사보고서는 123책, 전적조사에 따른 발췌한 조사자료는 83책이었다. 또 별도로 조선왕조실록으로부터 요강을 발췌한 것이 있는데 주로 법전, 친족, 상속, 유언, 戶口, 錢幣, 號牌, 노비, 良役, 諸田, 貢賦, 稅制, 冠婚喪祭 등에 관한 사항의 색인을 편성한 것이다.[22]

이외에도, 참사관실에서는 식민통치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예컨대, ①조선 古書 및 金石文, 拓本 수집, ② 각 군의 읍지 수집, ③조선 재래 활자 및 판목의 정리 등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참사관실의 기록물에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한 기록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참사관실의 구관조사 업무는 1915

22) 이승일a, 앞의 책.

년에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면서 중추원으로 이관되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1915년 4월 30일 칙령 제62호로 관제가 개정되어 구관 및 제도 조사를 업무로 편입시켰다.[23] 중추원은 私法에 관한 조사를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행정상 및 일반의 참고가 될 풍속관습을 모두 조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방침을 세웠다.

① 私法에 관한 관습의 조사를 완결하고 편찬할 것
② 널리 구래의 제도를 조사할 것
③ 행정상 및 일반의 참고가 될 풍속관습을 조사·편성할 것[24]

종전까지 조선총독부의 조사는 私法的 관습 또는 식민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하였으나 중추원에서는 풍속관습을 비롯하여 구래의 제도로까지 조사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중추원에서는 1915년부터 1920년까지 역둔토 및 궁장토에 관한 사항, 양자 및 입후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권의 연혁, 전당권, 소작권, 보증채권, 객주, 능력(법인 제외) 등을 조사하였고, 地上權, 地役權, 入會權, 留置權, 先取特權, 연대채무, 채무양도, 매매, 家, 친족의 명칭, 친족의 범위, 親等,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 결혼(연령, 종류, 제한), 친자, 친족회, 부양의무, 상속, 居間, 위탁, 중개, 手形, 운송, 海商 등에 대한 사항도 자료 정리를 완료하였다.

이외에도 중추원은 구관조사의 부속사업으로서 조선반도사 편찬, 조선인명휘고(이후 朝鮮人名辭書로 개칭) 편찬, 조선사회사정조사, 조선지지(朝鮮地誌) 편찬, 부락조사 등도 추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물도 많이 생산하였다.

1921년부터는 민사관습·상사관습·제도·풍속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1923년 초에는 새로 민사관습조사항목을 편성하고 이 방침에 기초해

23) 「1915년 4월 30일 칙령 제62호」, 『朝鮮總督府官報』.
24)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61면.

조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는데, 민사에 관해서는 그 편별을 대체로 일본민법을 모방하고 한국에서의 특종의 사항을 참작하여 입안하기로 하였다. 이 중에서 1936년까지 탈고한 것은 토지소유권의 연혁 및 현행법령과의 관계, 계(契), 호적, 성명 및 관(貫), 결혼요건 등이었다. 민사관습에 관한 각종 조사보고서는 『소작에 관한 관습조사서(1930)』, 『민사관습회답휘집(1933)』, 『이조의 재산상속법(1936)』, 『조선제사상속법론서설(1939)』 등이 차례로 편찬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관습조사사업은 각종 부속조사사업도 함께 시행되었고 1938년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를 발간하면서 대략 마무리되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조사활동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관습조사자료를 생산한 기관의 주요 업무와 자료의 성격

생산기관	주요 업무	자료의 성격
부동산법조사회	1. 부동산법 관련 법률 기안	한국 부동산의 관습 및 제도
법전조사국	1.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부속 법률의 기안	한국 민법, 상법, 친족, 상속 관련 관습 및 제도
조선총독부 취조국 (1910.10.1~1912.3.31)	1. 조선의 각반의 제도 및 일체의 구관조사 2. 총독이 지정한 법령의 입안 및 심의 3. 법령의 폐지 개정에 대한 의견 具申	토지제도, 친족제도, 面 및 洞, 종교 및 사원의 제도, 양반에 관한 제도, 조선어사전 편찬, 지방제도, 舊법전조사국의 조사사항 정리, 常民의 생활상태, 조선통치에 참고할 수 있는 구미각구의 속령지 및 식민지 제도연구 등 18개 항목
조선총독부 참사관실 (1912.4.1~1915.4.29)	1. 조선의 제도 및 구관의 조사	1. 구관조사(조선인의 능력,친족, 상속, 부동산물권) 2. 조선 古書 및 金石文, 拓本 수집 3. 각군의 읍지 수집 4. 조선 재래 활자 및 관목의 정리
조선총독부 중추원 (1915.4.30~1938)	1. 조선의 구관 및 제도의 조사	1. 민사관습의 조사 2. 상사관습의 조사 3. 제도 조사 4. 민속 및 풍속의 조사(조선사회사정조사 포함) 5. 조선사의 조사 및 편찬 6. 조선역사지리의 조사 7. 일반 조사자료의 수집 및 편찬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의 조사 범위는 대체로 식민통치에 필요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었다. 1910년대 관습조사사업은 1915년 중추원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제도조사, 풍속조사, 조선역사 및 조선지지 사업으로 확대되

었다. 따라서 중추원 자료군은 관습조사 부분을 포함하여 관습조사사업에서 파생된 각종 조사사업 일체의 문서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중추원의 조사활동을 유사 사업군끼리 묶으면 다음과 같다.

〈표 5〉 중추원의 조사활동의 분류

분류항목			세분류
관습조사	민상사 관습 조사	민사관습	제1장 私權의 주체, 제2장 人 이외의 권리의 주체, 제3장 사권의 득상변경, 제4장 물권, 제5장 채권, 제6장 친족, 제7장 상속, 제8장 유언
		상사관습[25]	제1장 상업단체,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대리상, 제5장 회사, 제6장 상행위, 제7장 手形, 제8장 海商
		구관심사관련	1)개간소작, 대동군내의 원도지, 대동군내의 轉賭地, 의주·용천 2군에서의 原賭地, 중화군의 특종소작, 中賭地, 전주군의 禾利賣買, 친족의 범위 2)친족에 관한 사항, 家에 관한 관습, 친자에 관한 관습, 친족회에 관한 관습, 부양에 관한 관습, 상속에 관한 관습,
	제도조사		國制(국호, 강역, 인민, 정치, 연호, 曆時, 璽寶, 국기) 王室(왕위, 대리, 왕족, 책봉, 궁궐, 종묘, 사직, 園丘, 殿 宮 廟, 陵 園 墓, 內帑), 구역(경성, 四都, 각도, 각읍, 坊面, 동리), 관직(의정부, 외관직), 관원(관원, 임면, 과거, 취재, 녹과, 고과, 포폄, 증직, 녹훈, 越祿 解由 拘碍, 급가), 내무, 외교, 군제, 재판, 재무, 지방자치(이하 생략)
			탈고한 사항 : 국제, 법전, 관제, 지방제도, 진휼제도, 水利에 관한 제도, 압록강 연안의 국경의 연혁 및 國境警備史
	풍속조사		1915~1921 제1장 의식주, 제2장 車輿船舶, 제3장 출생, 제4장 관혼상제, 제5장 諸禮式, 제6장 직업, 제8장 俚諺, 제9장 종교 미신 제15장 오락, 제16장 유희, 제17장 연중행사
			1922~ 제1장 복장, 제2장 음식, 제3장 주거, 제4장 車 輿 船, 제5장 출생, 제6장 관혼상제, 제7장 예속, 제8장 직업, 제9장 학문, 제10장 俚諺, 제11장 예의 제12장 가정의 일상, 제13장 종교, 제14장 미신, 제15장 節行, 제16장 의약, 제17장 미술, 제18장 樂 歌 舞, 제19장 오락 및 유희, 제20장 족보, 제21장 농업 및 어업, 제22장 巫卜 및 術客, 제23장 성명, 제24장 연중행사, 제25장 雜
			부속사업 조선사회사정조사, 부락조사
역사/지지	조선사		조선반도사, 朝鮮人名辭書, 日韓同源史
	조선역사지리		朝鮮地誌,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색인, 각종 읍지 수집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법전조사국 기록물을 포함하여 취조국, 참사관실에서

25) 이 조사는 원래 민사관습과 함께 구관조사라는 명칭으로 포괄되어 조사되었으나 1923년부터는 상사관습조사가 독립되어 수행되었다.

생산한 기록물 일체를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법조사회 조사자료들은 출판물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법전조사국의 조사자료들은 <한국관습조사보고서>를 제외하면 모두 필사본의 형태로 남아 있다. 이 자료들은 국사편찬위원회 및 수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취조국, 참사관실, 중추원의 자료들도 일부 출판물을 제외하면 국사편찬위원회 및 수원박물관에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법전조사국에서 생산한 일반조사서 및 특별조사서 등은 법전조사국이 폐지된 이후에 해당 업무를 승계한 조선총독부 취조국→참사관실→중추원 등에서 관리하다가 해방 후에는 문서군들이 흩어졌다.[26]

2. 해방 직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련 자료의 산일

법전조사국을 비롯한 관습조사보고서류들은 해방 직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서고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7] 왜냐하면 관습조사 업무가 부동산법조사회→법전조사국→취조국→참사관실을 거쳐서 중추원으로 업무가 인계되었고 관련 자료들도 함께 이관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당시 경성(서울)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해당 건물에 조선사편수회도 함께 입주해 있었고 담당업무도 매우 유사하였기 때문에 두 기관의 자료들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해방 직후에 일본인들이 대거 한국을 떠나면서 식민통치기록에 대한 접수 및 관리가 매우 시급하였다. 조선총독부 본부가 패전 전후로 하여 총무과가 소장하고 있던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파기하여 해방 직후 미군정이 접수한 조선

26) 이 자료들은 후에 국사편찬위원회, 수원박물관, 각 대학도서관 및 일본 미국 등의 도서관에서 소장 관리하게 되었다.

27) 부동산법조사회의 조사기록들은 출판되어서 각 기관에 배부되었다.

총독부 공문서는 약 3만여책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28] 또한, 중추원 및 조선사편수회에는 주요 통치자료들 뿐만 아니라 조선 재래의 고문서 및 고문헌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들에 대한 접수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과 조선사편수회의 자료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중추원과 조선사편수회는 업무의 특성상 관습조사서류, 조선사 관련 서류, 민속 및 풍속 관련 조사자료들을 주로 생산 및 관리하였고 비밀문서 또는 핵심 통치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추원 및 조선사편수회 자료는 해방 직후에 당시 조선사편수회에 근무하고 있던 申奭鎬, 金建泰씨의 노력에 의해서 일부나마 보존될 수 있었다. 당시 조선사편수회에는 일제의 한국침략 음모의 결정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1894~1910)을 촬영한 사진 원판 44,000매와 이를 인화한 사진첩 400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제 총독부는 패전하자마자 이중에서 사진첩 400여권을 중앙청(조선총독부 건물) 서편광장에서 소각해 버렸고, 이어서 원판마저도 파괴하려고 하였다. 이 사실을 감지한 양인은 원판을 일제의 눈을 피하여 중추원 서고로 옮겨 버림으로써 그 귀중문서가 현재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29]

이렇듯,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민족사료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등이 생산하거나 수집한 각종 사료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폭 넓게 확산되어 미군정청 당국과 교섭하였다. 이 요청을 미군정청이 수락함으로써 발족된 것이 '國史館[30]'이었다. 당시 국사관은 조선사편수회

28) 미군정이 접수한 조선총독부 공문서는 조선총독부 본부 기록물로서 총무과가 관리하던 것을 말한다.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관리체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 참조. 박성진・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역사비평사, 2007).

29) 國史編纂委員會, 『國史編纂委員會史』(國史編纂委員會, 1990), 57면.

30) 「국사관 설치규정(1946. 3.23)」. 1946년 3월 23일에 미군정청령으로 국사관 설치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6년에는 744,600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일제시대 중추원 내에 있던 조선사편수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 중추원 건

와 중추원이 소장하고 있던 모든 사료를 접수하여 발족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중추원 사료는 司法府에서 접수하여 간 뒤였으므로 조선사편수회가 소장하고 있던 사료만을 접수하였다.[31]

하지만 미군정 사법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자료군들을 인수한 직후에 사법 운용에 필요한 자료 외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추원 자료를 사법부가 모두 접수하여 관리하였다면 법원도서관이나 국가기록원 등에 소장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중추원의 조사자료들은 이 기관들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다. 이 자료들은 민간으로 유출되었고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일부는 유실되었으며, 유출된 이후에 여러 복잡한 사정을 거쳐서 국사편찬위원회와 (고)이종학 선생이 수집하였고 일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국회도서관, 한국의 각 대학도서관[32], 일본 및 미국의 일부 대학도서관 등에서 파편적으로 입수하였다.[33]

국내외 기관 중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수원박물관이다. 이 기관들이 언제 어떻게 수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두 기관의 소장 자료가 가장 많고 또한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 전체를 사법부가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경복궁 후원에 있는 緝敬堂으로 이전하였다. 國史編纂委員會, 『國史編纂委員會史』(國史編纂委員會, 1990).

31) 國史編纂委員會, 『國史編纂委員會史』(國史編纂委員會, 1990), 58면.

32) 참사관분실관계서류가 대표적인데 서울대학교 구관서고에 있다.

33) 이종학 선생이 수집하였던 자료는 현재 수원박물관에서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다.

Ⅲ. 일제 관습조사자료의 기관별 현황과 특성

1. 국사편찬위원회의 중추원 자료군의 소장 현황과 분류, 記述

국사편찬위원회는 1983년에 '古書目錄'이라는 목록집을 발행하였는데[34] 이 목록은 당시까지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던 고서, 일제침략기 총독부 중추원 도서, 고서를 복사한 전자복사판, 고서를 촬영한 사진본을 수록하였다. 이 목록을 기준으로 중추원 자료를 정의하면, 국사편찬위원회는 해방 직후에 점유한 조선사편수회의 일부 자료와 중추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중추원 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분류한 중추원 도서에는 조선 재래의 고문헌 및 고문서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조선사 편찬 업무가 중추원에서 시작되었다가 1925년에 조선사편수회가 설립되면서 업무가 인계되었고, 또한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중추원이나 조선사편수회가 조선 재래의 각종 사료들을 수집・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5]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가 분류한 중추원 자료는 중추원 및 조선사편수회가 생산하거나 업무상 수집한 한국의 고문서까지 포함하고 있다.

고서목록은 중추원 도서에 대하여 "그 내용이 대부분 고서에서 복사 또는 발췌"한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문헌조사서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추원 도서 중 "복명서, 조사서, 회의록, 기타 자료 등이 한문과 일본의 혼용으로 된 것이 있으나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포함시켰다"고 기술하였는데[36] 이 표현은 실지조사서류 및 관련 회의록 등을 말하는 것이다.

'고서목록'에서는 고서를 2,134종 12,989책, 중추원 도서를 1,508종 4,773책, 전자복사판은 299종 902책, 사진본은 234종 905책 등 총 4,175종 19,569책으로

34) 國史編纂委員會, 『古書目錄』(國史編纂委員會, 1983).
35) 이에 대해서는 박성진・이승일, 앞의 책.
36) 國史編纂委員會, 『古書目錄』(國史編纂委員會, 1983).

분류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분류기호 앞에 붙인 별치기호를 중추원도서는 <中>으로, 전자복사판은 <電>으로, 사진본은 <寫>로 표시하였다.

〈표 6〉 국사편찬위원회 분류 현황

종류	책수(비율)
고서	12,989(66.37%)
중추원 도서	4,773(24.39%)
전자복사판	902(4.60%)
사진본	905(4.62%)
합계	19,569(100%)

고서목록 상에서 중추원 도서는 약 24.39%로 분류하고 있으나 <中> 기호가 붙지 않은 중추원 자료도 있다. 朝鮮史編修會 관련 문서도 분류의 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조선사편수회 문서는 <中> 기호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일부 자료는 <中> 기호가 붙어 있다.

〈표 7〉 조선사편수회 문서의 분류 양태

중추원 자료로 분류된 것	비 중추원 자료로 분류된 것
朝鮮史編修會關係書類綴(中B14-64) 朝鮮史編修會官制關係書類(中B12B-18) 朝鮮史編修會領收綴(中B14-63)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中B14-62) 朝鮮史編纂委員會第1回議案(電B14-65)	編修會書類綴(B14-74) 朝鮮時代ニ於ケル修史事業梗要(草稿)(B12B-19) 支那・平安南北道史料採訪復命書(B17B-91) 忠淸南道・全羅南北道史料採訪復命書(B17B-100) 史料調査要項(B17B-47)

〈표 8〉 관습조사자료이면서 중추원 기호가 붙지 않은 것

B16FB-38	普通人墳墓
B13G-109	特殊財産
B13IF-5	法外繼後謄錄(祭祀相續ニ關スル資料)
A5E-11	服制及喪制原本
A5E-26	親族ノ種類及親等ニ關スル資料
A5E-28	婚禮

국사편찬위원회는 중추원 자료군을 전통적 고서 분류방식인 經·史·子·集 등 4개의 部로 분류하고 있다. 기록관리학계에서는 행정기관의 기록물들은 '생산 출처[37]'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가 채택한 經·史·子·集은 주제별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표 9〉 국사편찬위원회의 고서분류표

部別	類 別
經部	總經類, 易類, 詩類, 禮類, 春秋類, 四書類, 小學類
史部	正史類, 編年類, 紀事本末類, 別史類, 雜史類, 史表類, 史評類, 傳記類, 系譜類史, 詔令類, 奏議類, 職官類, 政書類, 金石類 , 地理類目, 書誌類 , 鈔史類, 産業類
子部	總子類, 儒家類, 道家類, 釋家類, 兵家類, 農家類, 醫家類, 術數類, 藝術類, 譜錄類, 正音類, 譯學類, 雜家類, 雜書類, 天道教類, 基督教類, 其他宗教類, 西學類
集部	總集類, 別集類, 尺牘類, 詩文評類, 詞曲類, 小說類

위 고서분류표에 따라서 중추원 자료 전체를 분류, 통계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관습조사에 직접 관계가 있는 자료들이 고서분류표를 토대로 분류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우선, 중추원 자료 4,773책 중에서 조선 재래의 고문서 및 고문헌(문집류) 등을 제외하고 관습조사 및 그 부속사업에 해당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약 1,238책을 선별하였다.

<표 10>을 보면, 1,238책의 관습조사자료 중에서 경부는 1.1%, 사부는 94%, 자부는 3.7% 집부는 0.2%로 관습조사자료는 대부분 史部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8] 관습조사자료들은 대체로 같은 기관에서 생산되었고 동일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일부의 자료가 서로 다른 분류단위로 묶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7) 기록관리학에서 출처는 기록을 생산한 기관을 일컫는다.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38) 1,238책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및 조선사편수회가 생산/접수한 것만을 분류한 것이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수집한 한국의 고문서류, 문집류 등은 제외하였다.

〈표 10〉 분류 현황

분류	책수(비율)
경부	14책(1.13%)
사부	1,174책(94.38%)
자부	47책(3.79)
집부	3책(0.24%)
합계	1,238책(100%)

이상과 같은 분류는 기록물을 생산한 주체를 알 수 없게 만들고 기록물이 생산된 배경과 업무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부책의 주제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단위로 분류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류는 유사한 성격의 중추원 자료들을 쉽게 검색하지 못하게 하고 관련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표 10-a〉 經部의 예 : 총 14책

청구	서명	생산연도	판종	분량	분류
中A5E-4	冠禮竝禮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刊	油印版	1冊	經部 禮類 雜禮
中A5E-6	男子結髮ニ關スル沿革	1910~1945寫	寫本	1冊	經部 禮類 雜禮
中A5E-9	普通人喪禮	1910~1945寫	寫本	2冊	經部 禮類 雜禮
中A5E-10	普通人婚禮	1910~1945寫	寫本	2冊	經部 禮類 雜禮
中A5E-20	隱居ニ關スル資料	1910~1945寫	寫本	1冊	經部 禮類 雜禮
中A5E-22	葬禮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寫	寫本	1冊	經部 禮類 雜禮
中A5E-23	祭禮ニ關スル慣習調査報告書	1910~1945寫	寫本	1冊	經部 禮類 雜禮
A5E-26	親族ノ種類及親等ニ關スル資料	1910~1945寫	寫本	1冊	經部 禮類 雜禮

〈표 10-b〉 史部의 예 : 1,174책

청구	서명	생산연도	판종	분량	분류
中B14-1	家券地券調査報告書	1910~1945寫	寫本	1冊	史部 一般存案類
中B13IF-1	家族範圍*家屬*家口	1910~1945寫	寫本	1冊	史部 政書類 親族.相續.婚姻
中B16BBE-6	公州地方ニ於ケル特別調査書	1910～1945寫	油印版	1冊	史部 地理類 方志 韓國 忠淸道
中B14-16	慣習ニ關スル照會回答綴	1936~1938寫	原本	1冊	史部 一般存案類
中B14-15	慣習及制度調査沿革草起稿狀況	1910～1945寫	寫本	1冊	史部 一般存案類
中B6B-42	舊慣審査委員會誌	1910~1945寫	寫本	1冊	史部 雜史類 韓國
中B6B-43	舊慣審査委員會會議錄	1910~1945刊	油印版	1冊	史部 雜史類 韓國
中B16BBC-22	大邱郡ニ於ケル調査報告書	1910～1945寫	寫本	1冊	史部 地理類 方志 韓國 慶尙道
中B16BBC-25	東萊郡ニ於ケル調査報告書	1910～1945寫	寫本	1冊	史部 地理類 方志 韓國 慶尙道
中B13IB-6	東萊密陽兩郡二於ケル入會調査書	1927寫	寫本	1冊	史部 政書類 法令.詞訟 韓國
中B16CB-4	洑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寫	寫本	1冊	史部 地理類 山川・河渠 韓國
中B13G-68	驛屯土及牧場以外外國有各地種調査	1908刊	油印版	1冊	史部 政書類 度支
中B13G-70	永給田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油印	油印版	1冊	史部 政書類 度支

〈표 10-c〉 子部의 예 : 47책

청구	서명	생산연도	판종	분량	분류
中C11B-1	蓼圃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刊	油印版	1冊	子部 譜錄類 飮食・草木
中C11B-2	生活用品	1910～1945寫	寫本	1冊	子部 譜錄類 飮食・草木
中C2-27	朝鮮の鄕約	1910～1945寫	寫本	1冊	子部 儒家類
中C14D-3	朝鮮舊慣及制度沿革ノ調査	1910～1945寫	寫本	2冊	子部 雜家類 雜編
中C14B-13	朝鮮風俗集	1910～1945寫	寫本	1冊	子部 雜家類 雜考・雜說
中C11A-1	車輿船ニ關スル事項	1910～1945寫	寫本	1冊	子部 譜錄類 器物
中C11B-8	風俗調査	1910～1945寫	寫本	1冊	子部 譜錄類 飮食・草木
中C6B-2	年中行事	1910～1945寫	寫本	1冊	子部 農家類 時令
中C14B-11	俚諺	1910～1945寫	寫本	1冊	子部 雜家類 雜考・雜說
中C10G-1	舞	1910～1945寫	寫本	1冊	子部 藝術類 雜技藝
中C19-1	巫覡及卜術	1910～1945寫	寫本	1冊	子部 其他宗敎類
中C9-4	巫卜及術客	1910～1945寫	寫本	1冊	子部 術數類
中C9-5	迷信	1910～1945寫	寫本	2冊	子部 術數類

〈표 10-d〉 집부의 예 : 3책

청구	서명	생산연도	관종	분량	분류
D2B-12	規矩	朝鮮朝末期~日帝時代寫	寫本	1冊	集部 總集類 韓國人撰述
中D6B-5	民謠	1910~1945寫	寫本	1冊	集部 詞曲類 韓國人撰述
中D7B-4	野談	1910~1945寫	寫本	1冊	集部 小說類 國文

각부별로 분류된 자료들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經部에는 '冠禮竝禮ニ關スル調査報告書' '祭禮ニ關スル慣習調査報告書' 등 주로 유교적 예제와 관계된 친족, 혼인 및 장례의 관습조사서들이 분류되었다. 史部는 중추원 자료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조선사편수회 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읍지류, 실록 발췌본 등도 분류되어 있다. 관습조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조사서, 특별조사서, 제도조사서 등이 분류되어 있다. 子部는 종교, 일상 생활, 풍속 등의 조사서류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集部는 3책에 불과하지만 제도 및 풍속조사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모두 법전조사국와 중추원에서 생산되었고 관습조사 및 그 부속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분류단위로 묶여 있다. 예컨대, 경부의 '장례에 관한 조사보고서(葬禮ニ關スル調査報告書)'와 子部의 '삼포에 관한 조사보고서(蔘圃ニ關スル調査報告書)'는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특별조사서에 해당되지만 서로 다른 분류단위에 묶여 있다. 또한 집부의 民謠는 풍속조사 과정에서 작성되었으나 대다수 풍속자료는 子部로 분류되었다.

관습조사자료들을 생산 주체를 명확히 하고 발생 계통에 따라서 분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분류방법보다는 업무와 기능에 따른 분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록관리학에서 분류(정리)는 ①공통의 생산 원천으로부터 온, 공통의 특징과 파일 구조를 가지는 기록물들의 식별이나 수집에 의한, ②그 기록물들 간의 관계, 기록물과 그 생산자 사이의 관계의 식별에 의한 역사적 기록물의 조직화와 관리의 과정으로 규정한다.[39]

이러한 정의는 기록물의 분류(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기록물을 생산한 원천(출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공통적인 특징과 파일링 구조를

가지는 기록물들의 조직화와 상호 연계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중추원 자료에 대한 분류(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중추원 자료 분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관습 조사군	민상사 관습(1)	민사관습	총칙분야(사권, 인)
			재산분야(물권, 채권, 토지, 소작)
			친족/상속(혼인, 이혼, 입양, 상속 등)
		상사관습	상인, 상업단체, 상행위, 수형, 회사, 海商
		관습 일반류	관습법(판결록, 구관심의안, 각종 회답휘집류, 통첩, 각종 예규)
			주요 조사기관(부동산법조사회, 법전조사국, 취조국, 참사관실, 중추원)
			입법관련자료 : 우메 문서, 각종 법률/칙령(안)
	제도조사(2)	國制 및 왕실	국제, 왕실, 구역, 관직, 관원, 내부, 군제, 재무
		외교	외교 사항
		지방자치	향회, 향청, 향약, 리계, 사창, 작통, 民堡
		재판	詞訟, 형옥, 형율 등
	풍속조사(3)	일상 생활 및 풍속	복장, 음식, 주거, 車 輿 船, 출생, 관혼상제, 예속, 직업, 학문, 俚諺, 예의, 가정의 일상, 농업, 어업, 종교, 미신, 節行, 의약, 미술, 樂 歌 舞,오락 및 유희, 족보, 농업 및 어업, 巫卜 및 術客, 성명, 연중행사, 雜
		생활상태	조선사회사정조사, 각종 부락조사
역사/지지 조사군	조선사(4)	역사	조선반도사, 日韓同源史, 고문서 및 고문기 수집
		사전	朝鮮人名辭書
	조선지지류(5)	조선지지	朝鮮地誌,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색인
		읍지류	각종 읍지 수집
기타(6)		기타	기타

출처 및 기능에 따른 분류는 經史子集 분류법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첫째, 부동산법조사회, 법전조사국, 조선총독부에서 수행한 민상사 관습과 관계된 자료들을 역사적・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둘째, 1910

39) Fredric M. Miller 저, 조경구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진리 탐구, 2002).

년대 민상사 관습조사에서 수행되었으나 1920년대에 분화되어 수행된 제도조사 및 풍속조사에 대해서도 그 발생의 맥락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셋째, 1910년대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조사사업으로 수행된 조선사 관련 자료와 조선역사지리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도 체계적 · 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습조사와 관계된 약 1,238책을 <표 11>의 분류표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의 분류

분류항목		부책수		비율(%)	
관습조사	민상사 관습(1)	291	669	23.50	54.03
	제도조사(2)	270		21.80	
	풍속조사(3)	108		8.72	
역사 · 지지 조사	조선사(4)	76		6.13	
	조선지지류(5)	452		36.51	
기타(6)		41		3.31	
종합		1,238		100.0	

중추원이 수행한 조선조사와 관계된 자료들 중에서 관습조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669책(54.03%)으로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사 관계 자료는 76책으로 약 6.13%에 불과하다. 관습조사 자료 다음으로 많은 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조선지지류로서 452책(36.51%)이다. 조선지지류의 다수는 각 군의 읍지류들이다. 그리고 관습조사자료 677책을 성격별로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관습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중분류 현황

관습조사 세부분류	부책수	비율(%)
민상사 관습(1)	291	43.49
제도조사(2)	270	40.35
풍속조사(3)	108	16.14
합계	669	100.0

관습조사자료 669책 중에서 법전조사국 및 조선총독부 측에서 생산한 민상사 관습 자료가 291책(43.4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제도조사 자료들이 270책(40.35%)이다. 풍속조사 자료들은 108책 16.14%이다. 풍속조사의 경우에 조사항목은 많았음에도 관련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관습조사 및 제도조사와는 다르게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작성되었고 풍속조사의 결과물들은 중추원이 대규모로 출판된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표 11>에 따라서 관습조사자료들을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민상사 관습류

中B14-1	家券地券調査報告書	1910~1945寫		1冊(7張)
中B16BBC-10	慶州東萊昌原大邱調査書	1910~1945寫	법전조사국	1冊
中B16BBE-6	公州地方ニ於ケル特別調査書	1910~1945寫	법전조사국	1冊
中A5E-4	冠禮竝禮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刊		1冊
中B16CB-2	錦江及洛東江沿岸泥生浦落慣習調査報告書	1910~1945寫	취조국	1冊
中B13H-13	奴婢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寫	法典調査局 編	1冊
中B16BBC-25	東萊郡ニ於ケル調査報告書	1910~1945寫		1冊
中B13IB-6	東萊密陽兩郡二於ケル入會調査書	1927寫	中樞院 編	
中B16CB-3	蒙利契ニ關スル參考書	1910~1945寫	法典調査局編	1冊
中B16CB-4	洑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寫	法典調査局	1冊
中B13IB-8	保人ノ責任ノ一	1910刊	法典調査局 編	1冊(6張)
中C11B-1	蓼圃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刊	법전조사국	1冊
中B13IF-9	養子緣組ノ方式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寫	法典調査局 編	1冊
中B13G-70	永給田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油印		1冊
中A5E-22	葬禮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寫	法典調査局 編	1冊(2張)
中A5E-23	祭禮ニ關スル慣習調査報告書	1910~1945寫	法典調査局 編	1冊(16張)

〈표 15〉 제도류

中B18F-5	啓事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
中B18E-6	考課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
中B18E-7	告身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32張)
中B18F-6	貢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4冊
中B18E-8	功臣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

中B18B-5	科擧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
中B18E-10	官階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2冊
中B18E-11	觀象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2冊
中B18F-10	官員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
中B18A-1	官制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3冊
中B18E-14	官職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
中B18F-13	教育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3冊
中B18F-14	交通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29張)
中B18F-15	區域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2張)
中B18E-19	軍器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108張)
中B18B-7	軍糧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

〈표 16〉 풍속류

中B18F-109	風俗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
中C11B-7	風俗飮食調査書	1910~1945寫		
中C11B-8	風俗調査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
中C19-3	風俗調査ノ內迷信調査書整理報告書	1910~1945寫		1冊
中C14D-5	風俗調査計劃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
中B6B-290	風俗調査事項目	1910~1945寫		4冊
中B6B-289	風俗調査書整理報告書	1910~1945寫		1冊
中B18B-77	風水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
中B18F-110	風水說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
中B18F-120	凶禮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39張)
中C10F-2	樂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4冊
中C10F-3	樂器	1910~1945寫		
中D7B-4	野談	1910~1945寫		
中C11A-4	輿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3冊
中C11B-4	煙草	1910~1945寫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冊
中C10G-2	娛樂及遊戱	1910~1945寫		

이상의 분류는 동일한 성격의 자료군들을 묶어주는 장점이 있으며 해당 자료군들이 어떠한 업무에서 발생되었는지를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당 자료군들을 더 세부분류하게 되면 관습조사자료들의 성격과 유형

별로 접근하는데 좀 더 쉬운 검색도구가 될 수 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 古書目錄은 "분류, 청구기호, 서명, 저자, 크기, 판종, 연도, 수량"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자료의 형식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적절히 수행하고 목록의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목록기술은 모든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고, 기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記述은 기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기록을 이용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다.[40]

국사편찬위원회는 서명은 卷首題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卷首題가 부적당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表題 裏題, 版心題 등에서 적당한 것을 채택하여 기입하도록 했다. 저작의 표시는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는데 撰者 이외에 편자, 역자, 주석자, 증보자, 교정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록하였다. 발행사항의 경우에는 발행지 및 발행자, 발행연도 등은 그대로 표시하였다. 다만 한국에서 간행된 자료로서 중국연호를 사용한 것은 한국 왕의 즉위기년으로 통일하여 기재하였으며, 그 다음에 해당되는 서기 연도를 괄호로 묶어서 기록하였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중에서는 刊記가 넓은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간기가 없는 한국판의 발행연도 추정은 가능한 한 가깝게 추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록하였다.

조선 태조~선조 사이로 추정되는 간본 : 조선조 전기(刊)
조선 인조~철종 사이로 추정되는 간본 : 조선조 후기(刊)
조선 고종~순종 사이로 추정되는 간본 : 조선조 말기(刊)
일제침략시대로 추정되는 간본 : 1910~1945 (刊)

40)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역사비평사, 2008).

조선총독부 중추원 도서는 대체로 생산연도가 “1910~1945(刊)”으로 표기되어 있다. 표지 또는 내용을 보면 생산연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식민지 시기로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같은 표기 방식에서는 법전조사국에서 생산된 자료도 일부는 일제침략시대로 표기된다. ‘家券地券調査報告書’는 법전조사국이 1910년에 생산한 특별조사서이지만 고서목록에서는 저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생산연도도 불명확하게 처리되어 있다.

〈표 17〉 고서목록의 예

분류	청구기호	서명	저자	판종	연도	수량
생략	中B14-1	家券地券調査報告書		寫本	1910~1945寫	1책(7장)
생략	中B13IF-1	家族範圍*家屬*家口		寫本	1910~1945寫	1책
생략	中B16CB-3	蒙利契ニ關スル參考書	法典調査局編		1910~1945寫	1冊
생략	中B16CB-4	洑ニ關スル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編		1910寫	1冊
생략	中B13IB-8	保人ノ責任ノ一	法典調査局編		1910刊	1冊(6張)
생략	中C11B-1	蔘圃ニ關スル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編		1910~1945刊	1冊
생략	中B13IF-9	養子緣組ノ方式ニ關スル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編		1910~1945寫	1冊

또한, 古書目錄에서는 저자와 생산기관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 관습조사는 그 특성상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조사자가 있고 통역자도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기관과 저자(통역자)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습조사는 조사의 지역이 매우 중요한 식별요소로 기능한다. 실지조사의 경우에는 주요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관습을 채록하였고 지역이 각 조사서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록에도 “지역”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표 18〉 조선관습조사자료의 목록 기술 요소(안)

요소명	시리즈	편철(부책)	문건	記述의 예
참조코드 (소장기호)	-	관리번호	관리번호	中B13A-1
기록번호	-	문서철 부책기호	문서번호	調第000
자료제목	시리즈명	편철명	문건명	융희2년 조사보고서 隆熙二年 調査報告書
생산일자	생산년도	생산년도	생산일자	1908
기술계층	시리즈	문서철(기록철)	문건	문서철(부책)
규모	철 수량(00개철)	문건 수량(00개건) 또는 쪽수	쪽수(~쪽)	380쪽
매체(재질)	매체	매체	매체	미농지
크기	문서철 및 부책의 수 및 범위	크기	크기	20×28
언어	언어	언어	언어	일본어
지역	조사지역	조사지역	조사지역	안성
생산기관명	생산기관	생산기관	발신처	법전조사국
			수신처	
작성자명	-	작성자(통역자)	작성자(통역자)	川原信義(柳鎭爀)
수집이관정보	수집이관정보	수집이관정보	수집이관정보	법전조사국에서 생산된 후 중추원으로 이관되었고 해방 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함
입수처	-	입수처	입수처	국사편찬위원회
색인어	주제어, 사건명, 인명, 지명, 기구명	주제어, 사건명, 인명, 지명, 기구명	주제어, 사건명, 인명, 지명, 기구명	민법, 상법, 지역조사서, 법전조사국, 안성, 관습
열람조건	열람, 복제제한여부	열람, 복제제한여부	열람, 복제제한여부	공개
재생산조건	저작권 등	저작권 등	저작권 등	저작권 없음
복사본	-	M/F 기호	M/F 기호	M/F 기호
디지털 정보	-	디지털 정보 유무	디지털 정보 유무	○ (PDF 파일)
소장처	소장기관	소장기관	소장기관	국사편찬위원회
기술일자	기술 작성일자	기술 작성일자	기술 작성일자	2011.12.12
기술자	-	기술자명	기술자명	홍길동
규칙 및 협약				ISAD(G)

위에서 제안한 분류 및 기술(안)은 출처는 동일하지만 소장기관에 따라서 관리방식이 다른 관습조사자료들의 검색과 활용을 쉽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수원박물관 소장 관습조사자료의 현황과 특징

수원박물관에는 (고)이종학 선생의 유족들이 기증한 자료가 방대한 규모로 소장되어 있다. 원래, 이 자료들은 해방 직후에 미군정 사법부가 접수했으나 관리 소홀로 민간에 유출된 된 후에 (고)이종학 선생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것들이다. 이 중에는 조선관습자료가 약 758책이 있으며 관습 및 제도조사와 관계된 실록 및 각종 등록류를 발췌한 전적조사자료가 약 630책이 있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약 1,380여책이 있다.[41]

수원박물관에서는 이러한 관습조사자료들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존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 연구 진흥을 위하여 목록집을 발행한 바가 있다.[42] 이 목록집은 수원박물관이 관습자료들을 어떻게 분류・조직하고 검색을 위한 체제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이 목록집에 따르면, 수원박물관의 관습조사자료들은 분류체계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으나, 이 자료군들을 (1)고문서 및 근대문서군, (2)관습자료군, (3)지리지도군 (4) 화보 및 사진첩 (5) 사진엽서 (6) 수원관련 책자 등으로 묶어서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수원박물관에서는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분류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표 11>과 같이 분류할 필요가 있다. 수원박물관에 관습조사자료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758책인데 이것을 생산기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관습조사자료들이 하나의 기관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법조사회 등을 비롯하여 각각의 업무를 승계한 기관들에서 생산하였기 때문에

41) 필자가 분류한 통계는 수원박물관의 목록집에 제공한 것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필자가 중복자료라고 판단되는 일부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42) 수원박물관, 『사운 이종학 기증유물 목록집 (1)~(3)』(수원박물관, 2010). 이 목록집 중에서 관습조사자료는 제2권에 소개되어 있다.

생산기관별 분류가 대단히 중요하다.

〈표 19〉 수원박물관 소장 기록물의 생산기관별 현황

생산기관	부책수	비율(%)
부동산법조사회	1[43]	0.13
법전조사국	357	47.16
조선총독부 기관 (취조국/참사관실/중추원 등)	359	47.29
미 표기 및 기타 기관[44]	41	5.40
합계	758	100.0

비고 : 이 통계는 수원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목록에 근거하였는데, 문제별 조사서, 특별조사서, 풍속조사서, 제도조사서 등 생산기관이 명백한 일부의 자료는 필자가 직접 수정한 결과를 합산하였다.

총 758책 중에서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자료가 357책으로 약 47%를 점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로 분류된 것은 중추원에서 생산된 것이 가장 많으며 이외에도 조선사법협회, 강원도, 이왕직 등 식민지 시기의 기관을 모두 합산하였다. 생산기관별로 자료를 분류한 이유는 법전조사국에서 생산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고, 법전조사국 자료들은 모두 민상사 관련 관습조사자료로서 등질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중추원 등에서도 관습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풍속조사, 제도조사, 조선사, 역사지리 등 다양한 자료들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에는 생산기관별 분류만으로는 자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수원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목록집에는 생산기관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목록을 이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제가 생산한 관습조사자료 중에서 법전조사국에서 생산한 자료(실지조사서류)의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전조사국 자

43) 부책명이 「民事, 刑事, 陸軍刑罰法規類聚(不動産法調査會)」로 표기되어서 부동산법조사회가 생산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44) 미표기된 것 또는 식민지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료의 보존 비율을 소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표 20〉 법전조사국 관련 관습자료의 생산 및 보존 현황

분류항목	생산 부책	보존 부책	보존 비율(%)
지역조사서	48	10	20.83
문제별 조사서	660	315	47.72
특별조사서	111	46	41.44
관습조사보고서	6	2	33.33
각지관습이동표	5	3	60
합계	830	376	45.30

비고 : 수원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회도서관 등 국내 소재하는 기관들의 자료들을 모두 수합한 결과임.

<표 20> 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전조사국에서 생산한 지역조사서는 모두 48책, 특별조사서는 111책, 문제별 조사서는 660책, 각지관습이동표는 5책, 관습조사보고서는 6책 등이다. 이 중에서 지역조사서는 10책(20.8%)이 보존되어 있고 특별조사서는 46책(41%)이 남아 있다. 문제별 조사서는 수원박물관에만 315책이 있는데 전체 생산부책의 약 47%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지역조사서가 약 10책 밖에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별 조사서를 통하여 유실된 지역조사서의 내용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다. 수원박물관에는 지역조사서는 1권도 소장하고 있지 않다.

〈표 21〉 수원박물관 소장 자료의 분류 현황

분류항목		부책수		비율(%)	
관습조사군	민상사 관습(1)	580	671	76.51	88.52
	제도조사(2)	42		5.54	
	풍속조사(3)	49		6.46	
역사・지지 조사군	조선사(4)	14		1.84	
	조선지지류(5)	10		1.31	
기타(6)		63		8.31	
종합		758		100.0	

이상의 통계를 살펴보면 수원박물관 자료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습조사자료를 관습/제도/풍속조사 등으로 분류한다면 소장 자료의 약 88% 이상이 관습조사자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상사 관습자료가 76%가 되는 것은 수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관습조사자료의 높은 사료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제도조사 또는 풍속조사 자료는 각각 5.5%, 6.1% 등으로 적다.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제도조사 자료들이 약 21%이고 풍속조사 자료가 8.7%라는 점을 보면 수원박물관 소장 자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지역조사서, 특별조사서의 소장처이다.

〈표 22〉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지역조사서의 소장 현황

소장기관	지역조사서
국사편찬위원회	안성, (갑산), 대구, 동래
한국학중앙연구원	용천, 성진, 창원, 공주
국회도서관	영변, (갑산)
연세대학교	전주
합계	10책

〈표 23〉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특별조사서의 소장 현황

소장기관	특별조사서
수원박물관	27
국사편찬위원회	14
고려대학교	2
경상대학교	1
한국학중앙연구원	1
국립중앙도서관	1
합계	46책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실지조사서, 특별조사서 등의 생산 부책 및 그 소장처가 대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실지조사류 830책 중에서 약 45.52%가 전해지고 있다. 법전조사국의 핵심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지역조사서는 10책, 특별조사서는 46책이 남아 있다. 앞으로는 국내/외 기관을 좀 더 조사하고 학계에 소개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수원박물관의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와 비교하면 특징이 잘 드러난다. 예컨대, 국사편찬위원회의 소장 자료들은 하나의 완결된 부책 형식을 띠는 것이 많으나(지역조사서 및 특별조사서, 전적조사서) 수원박물관에는 지역조사서는 1권도 없으나 각지관습이동표, 관습조사보고서, 특별조사서가 27책, 문제별 조사서 등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비해서 국사편찬위원회는 문제별 조사서와 각지관습이동표 등은 1책도 없으며 특별조사서, 지역조사서, 풍속조사서, 제도조사서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장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수원박물관에는 법전조사국이 수행한 관습조사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舊調查書表”와 “慣習調查應答者調” 등이 대표적이다. “舊調查書表”는 법전조사국에서 생산한 실지조사보고서류의 유형과 생산현황을 그대로 적기하고 있으며 관습조사과정에서 참고한 舊文記類, 법령 등을 기록하였다. “慣習調查應答者調”는 1908년부터 1910년까지 피조사자로 동원된 한국인의 성명과 직업을 기록하고 있어서 관습조사보고서에 채록된 관습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수원박물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목록기술요소는 모두 7개 항목이다. 이 중에서 관리번호는 수원박물관이 부여한 고유번호이고 문서번호는 해당 부책에 겉표지에 붙어 있는 것으로 법전조사국, 취조국, 참사관실, 중추원 등에서 부여한 것이다. 이외에 문서명, 작성자, 작성년도, 발행기관, 지역명 등을 기록하고 있다.

〈표 24〉 조선관습자료 목록의 예

관리번호	문서번호	문서명	저자	작성 연도	발행 기관	지역명
B-1-382	신조제6	1(친족) 특별조사사항	안등정	1912		
B-1-423	신조제10	(능력) 능력에 관한 사항	유하계태랑			경성
B-1-23	신조제14	상속에 관한 사항		1911		춘천
B-1-424	신조제16	(능력) 능력에 관한 사항	안등정			함흥
B-1-383	신조제19	(유언) 유언에 관한 사항	안등정	1912		
B-1-384	신조제22	(상속) 상속에 관한 사항	유하계태랑	1913		
B-1-24	신조제26	(제도)특수세 동 둔에 관한 사항	유하계태랑	1912	총독부	의주 용천
B-1-425	신조제29	(능력) 능력에 관한 사항	유하계태랑			대구
B-1-25	신조제31	상속에 관한 사항		1911		대구
B-1-26	신조제36	상속에 관한 사항		1911		공주
B-1-27	신조제37	유언에 관한 사항		1911		공주
B-1-385	신조제43	(제도) 향교의 건물 및 기지	유하계태랑	1913		
B-1-426	신조제46	(능력) 능력에 관한 사항	안등정			청주
B-1-28	신조제49	유언에 관한 사항		1911		춘천
B-1-427	신조제53	(능력) 능력에 관한 사항	유하계태랑			진주
B-1-29	신조제55	상속에 관한 사항		1913		진주

국사편찬위원회의 목록과 비교하면 문서번호, 지역명, 작성자, 발행기관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명은 관습조사의 특성이 반영된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일반조사 및 특별조사는 모두 특정 지역의 관습을 채록하기 때문에 관습조사의 지역을 별도로 표기하게 되면 해당 자료를 이해하는데 매우 편리하다. 또한 조사보고서류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자와 발행기관을 서로 구분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발행기관보다는 생산기관이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 목록 기술요소도 조선관습조사자료의 종합적인 검색을 위해서는 일부 보완할 측면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목록과 비교하여도 일부 누락된 요소가 있다. 또한 각 분류체계를 채택하지 않은 점도 자료의 검색에 애로를 초래하는 사항이다. 수원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의 관습조사자료들은 동일한

기관에서 생산되었으나 분류체계와 목록 기술요소는 크게 다른 실정이다. 관습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 외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검색할 수 있는 분류체계의 적용 및 목록 기술요소의 보완이 필요하다.

Ⅳ. 맺음말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생산 및 수집한 자료들은 약 7,700여책이 남아 있다. 이 중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약 4,770여책이 중추원 자료로 분류되었고 관습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약 1,238책으로 추출하였다. 수원박물관에는 약 1,380여책이 관습조사자료로 분류되어 있다. 기타 대학도서관 및 국외의 도서관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중추원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수원박물관은 관습조사자료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 補足하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양 기관들의 자료들이 우선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거나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학, 법학, 민속학 등 관계 학자들의 심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국내외 기관에 소재하는 한국조사 및 관습조사자료들에 대한 종합 DB를 구축하되, 연구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목록기술요소를 개발하고 통합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록물이라는 특성에 맞게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실지조사가 일본인 조사관과 한국인 통역관이 함께 대동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사자란에 통역자명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설정하거나 지역명을 표기하는 등의 추가 요소가 필요하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수원박물관에서도 목록집을 간행하였으나 해당 목록집에는 기술되지 않는 항목도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 기술한다.

이와 함께 목록 기술의 전제로서 중추원 자료군의 출처 및 생산의 배경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자료들을 재분류하여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전통적인 분류방법(經史子集 분류)에 따라서 관습조사자료들을 분류하고 있으나 이 같은 분류는 유사한 관습조사자료들을 서로 묶어주지 못하고 해당 자료들을 생산한 출처와의 연계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원박물관에서는 분류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출처주의, 계층적 관리 등의 기록관리 원칙을 참고하여 기록 특성에 맞는 분류체제를 개발하되, 이를 위하여 조선총독부 중추원 자료군을 생산한 생산기관의 연혁 및 그 업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관련 연구자들이 관습조사자료들을 생산기관별/자료유형별/지역별/조사자(인명별)/소주제별/연도별 등 다양한 검색점을 활용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는 관습조사자료를 유형별/성격별/생산기관별/소주제별로 천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전조사국의 조사자료들은 지역조사서는 약 20%, 특별조사서는 약 40%, 문제별 조사서는 약 45% 등이 잔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남아 있는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유실된 지역조사서를 복원하고 특별조사서에 기록된 사항과 한국관습조사보고서와의 연관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통해서 한국에 소재하는 지역조사서, 특별조사서, 문제별 조사서, 각 지관습이동표의 생산 현황 및 보존 현황이 밝혀졌으며 전국에 소재하는 관습조사자료의 현황도 일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근대 한국인의 일상생활, 법 생활, 민속, 풍속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법사학뿐만 아니라 역사학, 민속학, 사회학, 경제학 등 관련 연구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자료]

자료 1. 특별조사서류의 소장 현황

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특별조사서(14책)

中B14-1	家券地券調査報告書	1910~1945寫		
中B16BBC-10	慶州東萊昌原大邱調査書	1910～1945寫	제363호	法典調査局
中B16BBE-6	公州地方ニ於ケル特別調査書(小作, 轉質, 於音 및 手形, 契, 同事, 永給田, 洑)	1910～1945寫	조제336호	法典調査局
中A5E-4	冠禮笄禮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刊		
中B13H-13	奴婢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寫		法典調査局 編
中B16BBC-25	東萊郡ニ於ケル調査報告書	1910～1945寫		
中B16CB-3	蒙利契ニ關スル參考書	1910～1945寫		法典調査局編
中B16CB-4	洑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寫		法典調査局
中B13IB-8	保人ノ責任ノ一	1910刊		法典調査局 編
中C11B-1	蓼圃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刊		法典調査局
中B13IF-9	養子緣組ノ方式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寫		法典調査局 編
中B13G-70	永給田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油印		
中A5E-22	葬禮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1945寫		法典調査局 編
中A5E-23	祭禮ニ關スル慣習調査報告書	1910~1945寫		法典調査局 編

나. 수원박물관 소장 특별조사서(27책)

B-1-435	調第三一二號	婚禮ニ關スル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B-1-436	調第三O八號	韓國ニ族ル氏姓ニ關スル調査	法典調査局
B-1-595	調第 三五二	浦項ニ於ける慣習 調査 報告書	法典調査局
B-1-419	調第三三九號	平壤地方商事ニ關スル慣習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B-1-424	調第二八一號	土地ノ添附ニ關スル慣習	法典調査局
B-1-593		妾ノ取戻ノ可否ニ關スル件	法典調査局
B-1-429	調第二九八號,一	債權讓渡ニ關スル慣習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B-1-371	調第256-2	倉庫事業ニ關スル慣習調査	法典調査局
B-1-411	第一二號	次養子ニ關スル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B-1-426	調第三O三號	傳貰ニ關スル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B-1-416	調第三O四號	傳貰ニ關スル家舍調査	法典調査局
B-1-073		典當鋪ニ關スル調査	法典調査局

B-1-415	調第二七二號	女子ノ營業ニ關スル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B-1-410	第一一號	生養奉祀ニ關スル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B-1-437	第一五號	分家ニ付特別ナル家督相續開始ノ原因	法典調査局
B-1-417	調第三四一號	務安地方商事ニ關スル慣習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B-1-421	調第二九七號	無擔保債權ノ實行ニ關スル調査	法典調査局
B-1-588	參第二十二	墓地ニ關スル調査書	法典調査局
B-1-423	調第二八七號	東萊地方入會權及補充調査問題ニ關スル慣習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B-1-208	調第244-2	代理商ニ關スル慣習	法典調査局
B-1-434	第一四號	國事犯者ハ相續人　ハトナルユトゥ得サル力	法典調査局
B-1-594	調第 三四六	冠禮ニ關スル慣習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B-1-422	第七號	公課負擔卜年齡卜ノ關係, 戶主權行使卜年齡卜ノ關係	法典調査局
B-1-591		契ニ關スル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B-1-431	調第二七八號	隔地者間ノ意思表示ニ關スル 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B-1-433	調第三二九號	客主ノ營業ニ關スル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B-1-432	調第三二六號	家僮ニ關スル 調査報告書	法典調査局

다. 기타 도서관 소장 특별조사서(5책)

춘추 383.32 영55ㅂ	永小作權ニ關スル慣習調査報告書	발행년 미상	法典調査局	경상대
366.6 H832o	於晉及ヒ手形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10	法典調査局	한국학중앙연구원
346.53078 1908	辨細音こ關スル調査報告書	발행년 미상	法典調査局	고려대
희귀 346.52043 1945	地券發行に關スル細目	발행년 미상	法典調査局	고려대
朝22-B22	不動産法調査報告要錄	-	法典調査局	국립중앙도서관

▌참고문헌

國史編纂委員會,『古書目錄』, 國史編纂委員會, 1983.

_____,『國史編纂委員會史』, 國史編纂委員會, 1990.

朴賢洙,「日帝의 朝鮮調査에 관한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수원박물관,『사운 이종학 기증유물 목록집 (1)~(3)』, 수원박물관, 2010.

심희기,「일제 강점 초기 식민지 관습법의 형성」,『법사학연구』28, 한국법사학회, 2003.

왕현종,「1906~7년 부동산법조사회의 활동과 한국 토지 관습」,『일제의 조선관습조사자료의 현황과 성격 Ⅱ(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자료집)』, 2012.

윤대성,『한국민사법제사연구』, 한국학술정보, 2009.

이승일a,『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이승일b,「일제의 관습조사사업과 전국적 관습의 확립과정 연구」,『대동문화연구』6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이승일c,「동아시아에서 재판 규범으로서의 '관습법' 개념의 수용과 변용－全國民事慣例類集, 韓國慣習調査報告書, 臺灣私法의 분석을 중심으로」,『한국민족문화』4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12.

이영학,「통감부의 조사사업과 조선침탈」,『역사문화연구』3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1.

장철수,「조선총독부 민속조사자료의 성격과 내용」,『정신문화연구』21-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정긍식,『韓國近代法史攷』, 박영사, 2002.

鄭鍾休,『韓國民法典の比較法的硏究』, 東京 : 創文社, 1989.

朝鮮總督府中樞院,『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최석영,「일제의 구관조사와 식민정책」,『비교민속학』14, 비교민속학회, 1997.

최원규,「대한제국과 일제의 土地權法 제정과정과 그 지향」,『동방학지』9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6.

홍양희,「식민지시기 친족관습의 창출과 일본 민법」,『정신문화연구』28-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n the Collection of Custom Investigation Materia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ee, Seung-Il *

The Japanese Empire had conducted a wide ranged custom investigation on Korea from 1906 to 1938. Itou Hirobumi(伊藤博文) had started investigating the custom in order to legislate the real estate law as well as investigating the custom and the system of Korea with the objective of legislating the civil law in 1908.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as produced many records while conducting the custom investigation and its affiliated projects.

Despite the fact that these records are the documents to find out about the customs, folklore, laws and lives of modern Korean people, the basic investigation on how much of these materials have been produced or which agency the collections are located. In this study, the status of custom investigation materials collection at the Suwon Museum of History(수원박물관) and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국사편찬위원회) was compared to be introduced. Despite the fact that all these materials are produced in the process of custom investigation, the classification or organization method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llection agency and the introduction on the characteristic of materials is also unable to be performed. In this paper, the list description will be presented as it introduces the materials of 'custom investigation materials' for raising the

* Researcher of Institute for the study of korean modernity, Yonsei University

utilization of researchers while newly proposing the classification and organization system of each materials

[Key Words] custom, customary law, custom investigati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국사편찬위원회), Suwon Museum of History(수원박물관)

접수일 : 2012.8.31., 심사일 : 2012.9.19.-9.28., 게재확정일 : 2012.9.28.